

'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·납부

- (개요)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.31.까지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3.1.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.
 - *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.4. 까지 법인세를 신고
- (도움자료)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.
 -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법인별 사전 안내자료, 세법 도우미,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「신고도움서비스」를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* (사전안내) '19년 35개 → '20년 40개, (절세 Tip) '19년 20개 → '20년 25개
- (신고편의)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「신고도움서비스」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'바로제공 서비스'를 마련하였고
 - 동종업종과 소득률,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·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하였으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(신고지원)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하여 세금신고·상담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,
 -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,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·PPT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□ (세정지원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
○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 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*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

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「감염병 특별관리지역」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·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겠습니다.(4.30. 공휴일로 인해 5.4.까지 신고)

* 법인세 신고기한(3월말)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

○ 또한, 관광업, 여행업, 공연 관련업, 음식·숙박업, 여객운송업, 병·의원, 도·소매업, 중국교역기업*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

* 중국 현지지사·공장 운영·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

-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고

-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*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.

*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·125개 세무서에 설치하여 전담대응

○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*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.

*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·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:(경남) 거제시, 통영시, 고성군, 창원 진해구, 울산 동구, (전북)군산시 (전남)영암군, 목포시, 해남군

□ (신고 후 검증)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*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